제1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요구자료

댐 특 위 지 원 반

목 차

□ 세정과 소관(자원세 신설 추진상황) ····· 199

□ 환경관리과 소관 ····· 204

- 부유물처리 일원화 및 근본대책
- 용수요금 산정방법
- 호우기댐주변 부영양화현상시 뻘에자란 잡초제거등 수질보전대책

□ 원예유통과 소관(느타리, 영지등 버섯재배사업) ····· 208

□ 농지개량과 소관(농경지 유실방지 대책) ····· 209

□ 농산과 소관(농작물 피해보상을위한 연구방안) ····· 210

□ 축산과 소관(산란기 빙어남획방지지도 및 빙어 번식방안) ··· 211

□ 관광과 소관(댐주변 부분적 관광개발 방안) ····· 212

□ 지역계획과 소관(단양 별곡4단지 개발) ····· 215

- 댐주변 휴·폐경 농경지 피해보상
- 단양 별곡지구에 대한 주거지역화

□ 도시개발과 소관 ····· 216

- 보조댐 수위 상승에따른 상수도시설대책
- 문의하수처리장 운영비 국·도비 지원 (4억5천)
- 수질오염 심각 취수탑 이전

□ 주택과 소관(국민주택기금 융자원리금 상환방법 개선) ····· 218

□ 치수과 소관 ····· 219

- 골재채취 사용료 전액 군수입 조치요망
- 배수펌프장 설치에따른 운영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 도선교체 지원대책
- 옥천·군북·방아실의 주차장시설 설치

자원이용세신설추진상황종합보고

〈 세정과 소관 〉

□ 신설의 필요성

○ 자원이용세는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자원을 세원화하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도의 경우 충주.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기존의 지방세 재원이 사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수확보 대책의 강구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세원화함.

□ 추진방향

○ 자원이용세의 과세대상은 우리도의 자원현황을 기준할때 수자원.지하자원.관광자원으로 크게 대분됨.

○ 그러나 수자원과 지하자원에 대하여는 이미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 관광자원을 세원화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하되

지역개발세	+	관광세	=	자원이용세 신설

○ 다만, 추진의 현실성을 감안 기존설치세목에 대하여는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범위 확대검토 건의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지역개발세

○ 집행부서 추진

- '92년 8월부터 4회에 걸쳐 중앙부서에 건의

내용)

. 발전용수 : 물 10㎥당 1원 ——→ 3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1 ——→ 1,000분의 3

. 지 하 수 : 원수 ——→ 원수 + 첨가물

- '94. 3 : 생수시판 허가와 관련 지하수에 대하여만 별도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범위확대 건의

. 현행 지하수 1㎥당 10원 ——→ 1,000원

. 원수에 한해 과세 ——→ 원수 + 첨가물

. 세수증대액 : 3억 정도

○ 도의회 추진

- '94. 4월 내무위에서 충청북도세조례 개정 현행 지역개발세 세율의 50% 인상

내용)

. 발전용수 : 물 10㎥당 1원 ——→ 1원 50전

. 지 하 수 : 물 1㎥당 10원 ——→ 15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1 ——→ 1,000분의 1.5

관광세 신설

○ '94. 3월 관광세 신설안 건의 ——→ 내무부

관광세 신설(안) 요약

1. 형　　태 : 도세. 목적세
2. 납세 의무자 :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이용자
3. 과 세 권 자 : 시장, 군수
4. 과세 표준액
   - 관광지 입장,주차요금. 관광시설이용요금. 관광숙박요금
5. 세　　율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0

[내 무 부]

○ 검토의견

- 현행 세목중 지역개발세는 세수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부산 컨테이너 92.4%) 과세대상으로 볼때도 자원세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따라서 지역개발세의 세목을 자원세로의 변경 검토중임.
- 그러므로 관광세의 새로운 세목 신설보다는 자원세의 과세대상에 관광세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임.

○ 추진상황

- 민자당 "경제연구회"에 관광세 신설안 보고 (세제국장)

※ 민자당 경제연구회

. 구성 : 전직 관료출신 국회의원 8명 (임사빈. 나웅배등)

. 성격 : 민자당내 경제연구 친목단체

□ 추진평가 (내무부 입장)

지역개발세

- ○ '92. 8월부터 건의한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에 대하여 '92 신설세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어려움을 표명하였으나
- ○ 생수시판 허가와 관련하여 지하수에 대한 세율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므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전반에 대한 세율검토가 있을것으로 보아짐.

관 광 세

- ○ 1차 내무부 검토의견과 같이 자원세를 흡수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될것으로 보아지나 국세.지방세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장기발전대책으로 보아야함.

□ 향후 대책

- ○ 자원이용세 신설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의
- ○ 관련 지원기관의 협조 요청

자원이용세 신설개요(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 과 세 대 상	○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관광자원	
○ 납세 의무자	○ 발전용수 ┐ ○ 지하수 ├ 현행 지역개발세와 같음 ○ 지하자원 ┘ ○ 관광자원 ―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이용자	
○ 납 세 지	○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은 현행 지역개발세와 같음 ○ 관광자원에 대한 자원세는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	
○ 과 세 표 준 및 세 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 당 3원 ○ 지하수 : 개발하여 채수된물 1㎥ 당 1,0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가액의 1,000분의 3	
	○ 관광자원 : 관광지 입장요금,관광지 주차요금,관광시설 이용요금,관광숙박요금의 1000분의 100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 환경관리과 소관 〉

구 분	건 의 내 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소 관 부 서	비 고
1. 공통사항	아. 부유물처리 일원화 및 근본대책 강구	○ 댐 부유물처리 체계가 수자원공사와 해당 군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직인 협조 및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적기 부유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수질오염 초래	○ 건설부의 댐내 부유물처리 대책 시달('88. 6. 21)에 의거 댐내 부유물(가시권내 포함)은 수자원공사, 유역내(육상)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토록 시달되어 현재까지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 댐내(가시권 포함)의 부유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책임 수거 조치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 앙) 환경처 수질정책과 건 설 부 수자원공사 (도) 환경관리과 청, 소 계	

□ 용수요금 산정 방법은 ?

○ 근 거 : 건설부 지침 ('88. 11. 15)

○ 요금체계

- 용수요금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지역적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 기본요율과 계량요율의 2부요금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초과요금을 인정할 수 있슴.

○ 용 수 단 가

- 원 수 : 톤당 45원 56전
- 공업용수 : 톤당 48원 53전
- 초과요금 ┌ 톤당 61원 36전(원수)
  └ 톤당 67원 52전(공업용수)

※ 용수 톤당 단가 : 원수기본요금 + 계량요금 단가
원수기본요금(30원 68전), 계량요금 단가(14원 88전)

○ 원수대 산출내역

$$\text{원수대 / 톤} = \left(\frac{\text{댐 건설비}}{\text{댐 내구년수}} + \text{년간운영비} \right) \div \text{종별 년간 예정 공급물량}$$

□ 댐지역 뻘에 자란 잡초가 우기시에 댐수위 향상으로 썩게되어 부영양화 현상 유발을 시키는데 이에 따른 대안은 ?

○ 수자원공사에 적기 잡초를 최대한 제거하여 이로인한 부영양화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 요청.

당면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1. 환경기초시설 운영 정밀진단

	운영중	설치중
- 하수처리장	7 개소	4 개소
- 간이오수처리장	6 개소	-
- 분뇨처리장	14 개소	2 개소
- 공단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9 개소	5 개소
- 축산폐수공동처리장	2 개소	-
- 쓰레기 매립장	32 개소	6 개소

ㅇ 법정 처리시설 시설용량 및 처리능력 진단

ㅇ 처리기준 이하의 적정운영 여부 조사

2. 폐수 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시

ㅇ 환경감시 기동순찰반 편성 운영 (15개 반)

ㅇ 수질보전 명예감시원제 운영 (163명)

ㅇ 전 업체의 환경관리인 교육 (1,540명)

3. 유독물 유출사고 방지대책 추진

ㅇ 등록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58개 업소)

ㅇ 업체별 주요 방제약품 사전 확보

ㅇ 사태발생시 긴급 대응태세 확립

4. 범도민 " 우리물 지키기 운동 " 전개

ㅇ 생활하수 줄이기

-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 합성세재 줄이기 등

ㅇ 환경오염 감시활동 강화

- 환경단체 부녀조직등 활용

- 도민 신고체제 확립

5. 수질오염 측정망 설치 확대 운영

ㅇ 도 지정 36개 지점 월 1회 점검 → 월 2회 점검

ㅇ 시.군 자체로 41개 지점 신규 지정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 원예유통과 소관 〉

구 분	건 의 내 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대 책)	비 고
버섯재배 사업 (느타리, 영지)	○ 주민 소득지원사업 - 지원 확대	○ 댐지역 주민의 느타리, 영지의 자금신청이 없고, 일시적인 자금확보에 어려움	○ '94 버섯재배 지원사업은 기 추진중에 있으므로 댐지역 주민이 자금희망시 사업배정 - '94 지원 · 재원 : 농특회계 융자계정 · 조건 : 3년거치 5년상환 금리 연 5% · 사업량 : 4,763평(균상면적) · 사업비 : 466,800천원(융자)	표고버섯 : 산림과 느타리, 영지 : 원예유통과

지역주민불편사항 및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지개량과 소관〉

구 분	건의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대책)	비고
충주 조정지댐	조정지댐의 가금면지역 농경지는 잘떨어지는 흙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 농경지가 계속 유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o 현 황 - 위치 : 가금면 루암리 97번지 - 지목 : 전 - 지적 : 1,475㎡ - 소유자 : 충주시 교현동 228-6 양성현 o 문제점 - 조정지댐 부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수변과 50Cm 정도 고차를 이루고 있으며 도절은 미립세사(보명개)로 파랑에 의하여 유실되고 있슴 - 유실정도 L=30m 정도	o 94. 4. 27. 댐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처리토록 통보 o 94. 5. 21. -한국수자원공사 처리결과 회신 현지조사 및 측량 결과 유실부분은 파랑등을 고려 여유로 보상한 구역임 금년 홍수기 후 조정지댐 연안 면밀조사 후 필요시 대책 검토 예정	

지역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농산과 소관〉

업무명	건의내용	문제점	대책	비고
1. 공통사항	바. 안개등 기상변화로 인한 농작물 감소 피해보상	. 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농작물 피해의 계량적 조사는 지극히 지난 - 댐 건설전 주변지역의 작물별 생산단수의 조사 사례없음 - 농작물의 작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 (기후,토양,재배관리등) . 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지난 - 지원시에도 한시적이 아닌 매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해야 하므로 지방재정 압박	. 안개등 기상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음 . 농촌진흥원의 연구 검토결과에 따라 대책 강구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축산과소관)

구 분	건 의 사 항	문 제 점	개 선 방 안 (대 책)	비 고
댐득위시 건의 사항 (묵 봉 호 위 원)	옥천군 이원면 장찬저수지는 금산군에서 굼을 뚫이 물을 . 당겨 저수하고 있는 데 , 빙어 산란기에는 빙어가 산란을 위하여 금산군 쪽으로 몰려기고 있이 지원손실이 큼 .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빙이 소싱기에는 터널입구 부근에 치단망을 설치하는 등의 행정 지도방안 강구 바람 .	빙어는 3월경 , 지질이 자갈이나 모래이고 수류기 있는 하천 지역에 산란하고 죽는 1년생 어류로 장찬저수지 주변을 조사한 결과 금산군과 통하는 터널 하천이 주수원이고 다른 계곡천은 우기에만 유입되는 실정이므로 터널하천이 빙어의 주신린장이 되고 있음 .	터널하천 부근에 치단망을 설치힘 시는 오히려 빙이지원이 감소할 우려기 큼 .	

댐특위보완자료요구검토

〈 관광과 소관 〉

□ 보완요구사항

○ 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개발의 의미는 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권의 부활을 요구하는것으로

○ 대단위 관광지개발이 환경문제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지방장관에게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보완

□ 보완사항검토 및 대책

가. 댐주변지역 개발을위한 용도지역현황

구 분	용도지역					비 고
	계	자연환경	농 림	준 농 림	준 도 시	
계	1,885,000	-	713,615	1,141,385	-	
물태지구	523,000	-	165,137	357,863	-	제천군
계산지구	234,000	-	34,978	199,022	-	"
탄지지구	295,000	-	149,148	145,852	-	"
능강지구	439,000	-	139,352	299,648	-	"
서운지구	364,000	-	225,000	139,000	-	중원군

나. 문제점

○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으로 관광휴양시설입지 지난

○ 건설부에서 충주호수질(현재 Ⅱ급수)을 Ⅰ급수로 상향조정한 후 수질개선추세에 따라 '94 이후 재검토 회시

○ 각종 개발규제강화로 인한 지역개발사업 지난

○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지사권한 위임사항이 1 ㎢(30만평) 이하로 되어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제58조)환경문제등 관련부서 협의절차는 동일하므로 변경추진 지난

다. 관광지개발 대상지구 용도지역상 지역개발검토

○ 관광개발 대상지구(5개지구)의 용도지역이 1,855천㎡로 농림지역이 38.5%인 713,600㎡ 이고 준농림지역이 61.5 % 인 1,141,400 ㎡ 임

-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을 개발여건이 좋은 대상지구(물태,탄지동)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94이후 관광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기타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필요로하지않는 현재의 용도지역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을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기여

라. 현 용도지역상 개발가능한 대상사업검토

○ 농림지역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산림법등 개별법에 저촉되지않는 시설

—— 관광농원.자연휴양림 (산림법 제31조) ——

○ 준농림지역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종 - 3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시설

※ 일반건축물 보일러 유류사용량 년간 500톤 이하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3. 면적이 3만㎡ 이하의 토지형질변경과 부지면적이 3만㎡ 이하인 시설 건축물

—— 관광농원,자연휴양림, 3만 ㎡이하 부지내 관광휴양시설 ——

○ 문제점

- 부분적 소규모개발시 환경오염방지시설 미비에 따른 법적제재 지난

- 간이정화시설 만으로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마. 관광지개발 국토이용계획변경 불가능시 관광개발추진대책

. 충북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통적이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생활기반특성을 활용.민속문화.역사문화.자연학습.특산물자원등을 탐방하고 향수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고향마을조성

가. 추진방향

○ 농촌지역에 부존된 관광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함으로서 자원의 생산성극대화

○ 지역환경과 농업여건을 고려한 개성있는 미래지향적 관광농촌지역개발

○ 지역출신 출향인사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향수를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과 함께 일하는 주말 종합관광농원으로 육성발전

나 개발구상

1. 농촌휴양관광농원조성

○ 대상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한 관광개발 잠재력이 있는곳으로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래방객의 유치가 용이한지역

○ 개발구상

-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개발로 주거환경.생활환경개선
- 농촌주택개량.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의관광자원과 조화있는 전원관광마을조성
- 지역 특산물개발,명품화하여 관광상품 생산판매
- 주말임대 농장조성으로 휴식과함께 일하는 관광 고향마을조성
- 전통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전통문화회관,자연학습장등 휴양단지조성
- 마을전체 집합오수 정화시설 설치로 환경오염방지 철저

2 자연경관 정화구역지정 운영

○ 수려한 산간계곡의 자연발생적 유원지에 정화구역을 지정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정화 관리운영

○ 관광진입도로 유료주차장시설 확충

- 자가용차량 증가에 따른 자가용차량 관광여행패턴 증가에 대비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발생적 유원지에 자동차야영이 가능한 유료주차장을 건설,운영하여 세수증대

○ 개발주체

- 시장.군수 주체하에 농민단체.지역주민 공동개발

지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 〈지역계획과 소관〉

건의내용	문제점	개선방안(대책)	비고
○ 댐주변 휴·폐경 농경지 피해보상	○ 댐 축조당시는 도강하여 경작하이도 수지가 맞았으나 현재는 인건비 상승등 여건 변화로 타산이 맞지않아 휴·폐경하게되이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 현행법상 휴·폐경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휴·폐경에 대한 보상 및 토지 매입은 불가한 실정임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정책적 차원에서 지원방안등을 검토하여야 할것임	
○ 단양 별곡지구에대한 주기지역화		○ 치수과 및 단양군에 통보 ('94. 5. 23)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치리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건설부에 건의할 예정임	

지역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대한 개선방안 〈도시개발과 소관〉

구 분	건 의 내 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대 책)	비 고
개별사항 (충주시)	ㅇ 보조댐 수위상승에 따른 상수도시설 대책	ㅇ 보조댐의 수위상승으로 지하수위가 높아져 간이식수원 오염	ㅇ 지방상수도사업 시행으로 식수난 해결 .급수구역 : 달천동,상용관,두담 하용두,만정리일원 .급수해택인구: 5,000명정도 .소요사업비 : 7 억 .사입기간:'94.5 ~ '94.11	
개별사항 (청원군)	ㅇ 문의하수처리장 운영비국도비지원 (4억5천)			ㅇ 문의하수처리장운영비는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 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되고있음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구 분	건 의 내 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대 책)	비 고
개별사항 (칭원군)	수질오염심각 취수탑 이전	○ 취수탑부근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수돗물에 이취미 발생	○ 취수탑 이전 건의 - 일 시 : '94. 5. 16 - 건 의 처 : 건설부 용수과 - 건의내용 : 대청광역상수도 2 단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가 착수됨에 따라 취수탑 이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취수탑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 ※ 기본설계 착수 - 일 시 : '94. 5. 4 - 시 행 청 : 건설부 - 용 역 비 : 682,500 천원 - 용역기간 : '94. 5. 4 ~ '95. 5. 3 (365 일간) - 용역회사 : 도화종합기술공사	

지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주택과 소관〉

구 분	건 의 내 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대 책)	비 고
ㅇ융자금 상환 방법 개선	ㅇ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건설한후 원리금을 월납으로 상환중에 있는것을 분기납, 반년납으로 상환할수 있도록 건의	ㅇ농어소득의 불균형으로 매월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심화되고 있음	ㅇ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제21조관련[별표1]에 의거 융자지원은 분기, 반년납으로 상환가능 · 주택은행에 융자금상환 방법협조요청 ('94.4.28) · 주택은행회신('94.5.4) -대출 계좌별로 일괄변경 가능, 세대별로 상환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는 대환시 각세대별로 납입 주기 변경 가능 · 각군에 시달 ('94.4.12)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치수과 소관〉

구 분	건 의 사 항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소 관 부 서	비고
옥천군	대청댐 구역내 골재채취 사용료 전액 군수입 조치요망	특정다목적댐법제29조. 제30조및 같은법 시행령제20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댐수탁관리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권(허가, 사용료수입)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댐구역내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에게 허가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 그 징수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재채취 사용료 전액을 군수입으로 조치는 불가함 . 다목적댐저수지및유휴지관리규정제8조(건설부령)	한국수자원공사 도:치수과 이수계	
충주시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요망	ㅇ 치수과 소관이 아니므로 재분류 요망 . '92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추진한 사업임			

○ 옥천군내 도선의 교체에 대한 지원

□ 현 황

○ 인도선 : 10척

. 건 조 일 : '79. 10 (울산 염포조선)

. 진 수 일 : '80. 7 (선령 14 년)

○ '94 지원 : 29,700천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 도선운항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 옥천군내 도선 10척중 실제 도선으로 이용중인 도선은 4척(7호. 9호. 10호. 11호)에 불과하고 4척(1호. 2호. 3호. 5호) 는 거의 이용치 않고 육상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마을공동철선을 개개인이 필요시 이용. 2척(8호. 12호)은 개인이 농업용으로 사용. 실제 활용치 않는 도선은 이후 보상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위하여 도선사업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있으므로 마을주민들의 선박관리가 소홀하여 파손 초래.

○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마을주민의 감소 및 선박관리 회피

○ 거의 이용치 않는 선박은 관리소홀로 프로펠러등 선체파손 및 엔진고착

□ 선박상태

○ 선박은 재질이 FRP로 제조되어 부식의 우려는 거의 없으며 외력에 의한 물리적인힘을 가하지 않는 한 수리. 보수. 정비를 수시 함으로서 수년간 사용가능 함.

□ 대 책

○ 현재 옥천군 도선 10척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원금" 29,700천원을 확보하여 '94. 3. 19 ~ 4. 30 까지 엔진교체. 선체보수등 선박운항에 지장이없도록 정비완료.

○ 이후 도선의 교체는 현지 실정 및 선박상태를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임.

※ 별첨참조

□ 옥천군내 도선 운항 실태

선 명	운 항 구 간	이 용 주 민		이 용 실 태
		가구수	주민수	
계		108	363	
옥천 1호	지 수 - 가 덕	가구 21	명 73	잠수교설치, 필요시 개개인이 나룻배이용 년중 거의 이용치 않음, 육상에 방치
옥천 2호	청 동 - 동락정	8	22	〃
옥천 3호	갈 마 - 동락정	4	13	마을선박을 필요시 개개인이 이용 년중 거의 이용치 않음, 육상에 방치
옥천 5호	동락정 - 고 성	2	5	필요시 개개인이 자가선이용 년중 거의 이용치 않음, 육상에 방치
옥천 7호	오 대 - 수 북	15	61	수시 도선으로 이용
옥천 8호	보 내 - 수 북	2	6	2가구가 농선으로 이용
옥천 9호	막 지 - 소 정	17	68	수시 도선으로 이용
옥천10호	용 호 - 석 호	7	19	주2회 정도 운항
옥천11호	도 호 - 막 지	14	53	주5회 정도 운항
옥천12호	추 소 - 이 평	18	43	개인이 농선으로 이용

□ 댐내 운항도선 교체 및 유지관리비 지원 추진

추 진	건 의	회 신 내 용
1. 도계 10200 - 1595 ('92. 7. 30) . 수신:수자원공사사장	○ 대청댐내 도선교체비 지원요구	○도선교체지원은 도선이 도로 부속물이므로 도로관리청 소관으로 지원불가
2. 치수 13660 - 312 ('93. 5. 18) 수신:수자원공사사장	○ 댐내 노후도선 교체지원	○도선은 도로부속물이므로 도르관리청이 재원조달하여 야함(도로법 제24조)으로 지원 불가
3. 대청댐 관계기관 간담회시 건의 ('93. 5. 25)	○ 대청댐의 도선 (11척) 교체 지원	○댐건조시 도선건조 지원으로 보상완료했으므로 지원불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선박건조에 대한 내용없어 지원불가
4. 치수 91090 - 402 ('93. 6. 25) 수신: 청원, 중원군수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댐주변 지역심의지역위원회위원장은 도선교체비및 유지관리비 지원토록 계획수립지시 -충주댐 :성묘수송선 1척 -대청댐 :노후도선 11척	○충주댐, 대청댐 지역위원회 계획수립 추진중
5. 치수 91090 - 403 ('93. 6. 25) . 수신:한국전력공사장 (발전소주변지역심의 위원회 위원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 94지원사업에 도선교체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토록 건의 -충주댐:성묘수송도선1척 -대청댐:노후도선 11척	○전화회신 댐주변지역위원회에서 '94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하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함
6. 치수 91090 - 4 ('93. 7. 24) . 수신:충주, 중원, 제천, 단양	○충주댐 성묘수송선박 운영비 확보토록"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94지원사업계획수립 지시	○지역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토록함
7. 치수 90190 - 505 ('93. 8. 3) . 수신:한국수자원공사장	○도선교체및 유지관리비 지원 건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으로 선박수리, 교체비지원은 가능하나 선박운영비 지원은 곤란
8. 치수 91560 - 594 ('93. 9. 11) . 건설부장관	○댐내 성묘객수송 도선운영비 지원 건의	○한국수자원공사 회신 . 지역개발세 및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금내에서 운영비 지원 가능

추 진	건 의	회 신 내 용
9. 도계 13660 - 122 ('94. 3. 7) . 수신:건설부장관	○ 댐내도선 건조비 국고에서 지원건의	○한국수자원공사 회신 . 댐주변지원사업비 및 지역개발비로 지원건조
10. 치수 13660 - 213 ('94. 4. 8) . 수신:수자원공사사장	○ 댐내 도선은 댐건설로인한 교통두절이므로 영구적으로 보상을 하여야 함	○한국수자원공사 회신 . 도선교체에 대한 계속적지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및 지역개발세로 지원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의 주차장시설 설치토록 요망

□ 현 황

- ㅇ 점용위치 :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수물선 이내)
- ㅇ 점 용 자 : 김원전외 2 명
- ㅇ 점용면적 : 약 100 ㎡
- ㅇ 점용내용

  옥천군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주차장시설등이 없어 수물선내로 성토하여 사용하고 있슴

□ 대청댐관리사무소 의견

- ㅇ 수물선내에서는 하천법제25조및동법시행규칙제7조의3(점용허가등의 방법.제한등), 동법제37조(하천에관한 금지행위)등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할 수 없슴.
- ㅇ 수물선내에 대하여는 논. 밭으로 경작토록 적극권장하고 있슴.